

안전시설등 설치(완공)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일
신고인	① 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영업소	상호	전화번호		
	주소			
	② 영업의 종류	③ 영업장 면적	구획된 실의 수	
	④ 영업장이 있는 층	⑤ 신고구분	[] 신규	[] 변경
	총 층	총 층		
⑥ 안전시설등의 종류				
소방시설 공사업자	⑦ 상호(명칭)	등록번호	대표자	
	소재지	제 호	전화번호	
불연화 및 통로·창문	⑧ 사용재료	설치면적		
	⑨ 영업장 내부통로	⑩ 창문크기		
		가로	cm × 세로	cm
⑪ 위치도 (약도)				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등의 설치(완공)를(을) 신고합니다.

신고인
소방본부장·소방서장 귀하

첨부서류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수수료
1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 도서(소방시설의 계통도,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, 내부구획의 재료,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) 1부.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 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. 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의 설치명세서 1부.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합니다. 3.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(복도,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 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) 1부.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 4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고시원업, 전화방·화상대화방, 수면방업, 콜라텍업, 방탈출카페 업, 키즈카페업, 만화카페업만 해당합니다) 1부 6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(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*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.	전기안전점검 확인서	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 (80g/㎡)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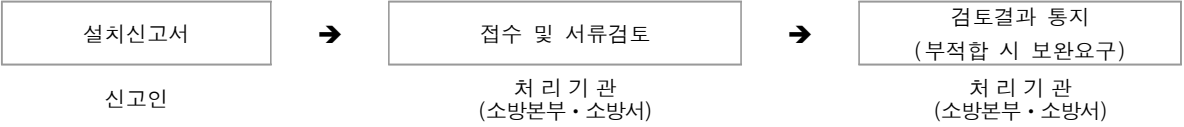
- 1. 안전시설등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 설치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 받으시고,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- 2.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안내받은 일시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3.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작성요령

- ①란에는 영업주(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, 법인의 경우 대표자)의 성명을 적으십시오.
- ②란에는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적으십시오.
- ③란에는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(영업장 내에 설치된 주방, 화장실, 창고, 계단, 기타 서비스공간을 포함합니다)의 바닥면적 합계 및 구획된 실의 수를 적으십시오.
- ④란에는 전체 건물의 층수와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있는 층을 적으십시오. 영업장으로 여러 층을 사용할 때에는 쉼표(,)로 구분하여 해당층을 적으십시오.
- ⑤란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에,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·영업장 내부구조·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√ 표시를 하십시오.
- ⑥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세목 별로 적으십시오.
- ⑦란에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상호(명칭)를 적으십시오.
- ⑧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사용재료와 설치면적을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, 합판·목재 등으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.
- ⑨란에는 내부통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내부통로의 폭을 적으십시오.
- ⑩란에는 영업장 창문 적용대상은 영업장에 설치하는 창문의 크기를 적으십시오.
- ⑪란에는 영업장의 위치도 또는 약도를 그려주십시오(별도로 첨부해도 됩니다).

처리절차

1. 설치신고 처리절차



2. 완공신고 처리절차

